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이병진 · 서미화
장철민 · 윤후덕 · 장경태
이용우 · 어기구 · 한병도
한준호 · 서영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,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,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(戒告), 부과 처분의 통지,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,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「행정기본법」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「행정기본법」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,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해서는 「행정기본법」을 준용하도록

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,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(안 제43조).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이행강제금) ① (생략)	제43조(이행강제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.	②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납부기한·수납기관·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<삭 제>
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	<삭 제>

<u>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</u> <u>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</u> <u>징수하여야 한다.</u> ⑥ <u>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</u> <u>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</u> <u>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</u> <u>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행정제</u> <u>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</u> <u>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</u>	<u><삭 제>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